정 정 신 고 (보고)

2026년 10월 22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삼성퇴직연금글로벌올에셋증권자투자신탁H[채권혼합-재간접형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4.06.13

3. 정정사유 :
- 모투자신탁(삼성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) 삭제
- 모투자신탁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 등
- Ce 클래스 신설

4.정정요구·명령관련 여부 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1조 (목적 및 종류 등)	②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**주식관련 자산(국내외 주식 및 국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), 채권관련 자산(국내외 채권 및 국내외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) 등에** 분산투자 하되, 채권 관련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**하고,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증권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이다.** 따라서 수익자는 **주식관련 자산, 채권관련 자산**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, **주식관련**	②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**글로벌 채권 및 주식 관련 자산을 각각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** 분산투자 하되, 채권 관련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**하는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이다.** 따라서 수익자는 **글로벌 채권 및 주식 자산**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, **글로벌 채권 및 주식 자산** 등은 전세계 경제 상황 및 주식, 환율,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자산, 채권관련 자산 등은 전세계 경제 상황 및 주식, 환율,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	
제2조 (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 및 모투자신탁)	②이 투자신탁은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삼성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 **2. 삼성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** 3. 삼성글로벌주식패시브EMP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	②이 투자신탁은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삼성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 **(삭 제)** 2. 삼성글로벌주식패시브EMP증권모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제14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집합투자업자는 __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 1. C 클래스 수익증권 **(추 가)** 2. Cf 클래스 수익증권 3. Cw클래스 수익증권	①집합투자업자는 __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 1. (현행과 동일) **2. Ce 클래스 수익증권** 3. (현행과 동일) 4. (현행과 동일)
제20조 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· 판매가격, 판매수수료 등)	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 1. (생 략) **(추 가)** 2. (생 략) 3. (생 략)	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 1. (현행과 동일) **2. Ce 클래스 수익증권: 온라인(On-line) 판매전용 수익증권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** 3. (현행과 동일) 4. (현행과 동일)
제37조 (투자한도)	①집합투자업자는__투자·운용한다. 1. 제2조제2항제1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. 2. 제2조제2항**제2호 내지 제3호**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이하로 한다. 3. (생 략)	①집합투자업자는__투자·운용한다. 1. (현행과 동일) 2. 제2조제2항**제2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이하로 한다.** **3. (현행과 동일)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4.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. **(추 가)** ②제1항제1호 내지 **제4호**의 규정에 불구하고 __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 ~4. (생 략) 5.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**제4호**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	4.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**제2호**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. **5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.** ②제1항제1호 내지 **제5호**의 규정에 불구하고 __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 ~4. (생 략) 5.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**제5호**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
제38조 (운용제한)	①집합투자업자는 __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3. (생 략) 4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**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**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(이하 생략)	①집합투자업자는 __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3. (현행과 동일) 4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**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**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(이하 현행과 동일)
제40조 (투자신탁보수)	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 신탁보수는 __ 금액으로 한다. 1. (생 략) **(추 가)** 2. (생 략) 3. (생 략)	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 신탁보수는 __ 금액으로 한다. 1. (현행과 동일) **2. Ce 클래스 수익증권** **가. 운용보수율: 연 1000분의 2.5** **나. 판매보수율: 연 1000분의 2.0** **다. 신탁보수율: 연 1000분의 0.3** 3. (현행과 동일) 4. (현행과 동일)
부칙	**(신 설)**	**제1조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. (모투자신탁 삭제, Ce 클래스 신설)**